

#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## 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교육감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1992년 10월 30일

○ 회부일자 : 1992년 10월 30일

3. 개 정 이 유

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(1992. 9. 17, 대통령령 제 13727호)으로 지방  
의회의원의 여비지급 기준액이 평균 10% 인상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 
교육위원의 여비를 인상 지급하고자 하는 것임.

4. 주 요 골 자

가. 여비지급 기준액 인상

○ 현지교통비 4,000원 ~ 5,000원 → 4,500원 ~ 5,000원

○ 숙박비 13,500원 ~ 16,000원 → 15,000원 ~ 17,000원

○ 식비 9,000원 ~ 10,500원 → 9,500원 ~ 11,000원

나. 위원회 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시 현지 교통비외에 식비도  
지급.

## 5. 검토 의견

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,

- 청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('92.5.22, 제1680호)의 개정으로 청주시 행정동의 분동과 행정동 명칭의 변경에 따른 것이고,
- 청원군 남이면 구암리, 상발리 지역은 청주시 제 3학교군에서 제 1학교군으로 변경하고, 청원군 강외면소재 상봉국민학교 통학구역인 상봉리,심중리 지역은 조치원중학교로 되어 있으나, 한국교원대학교 부속미호중학교와 공동학구로 조정하려는 것으로, 이는 교통여건 등의 변화와 주민의 요구에 따라 학교구(군)을 조정하려는 것임.
- 또한 증평지역 중학교 규모의 합리적 조정으로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, 현행 증평여자중학구를 증평읍 학교군에 통합하려는 것임.
- 이상과 같이 이번 개정조례안은 청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및 동장정수 조례의 개정과 더불어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학교운영의 합리화를 위한 것으로 ( : 행정예고를 거치는 등) 타당하다고 사료됨.

## 6. 개정조례안 및 참고자료 : 별첨